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612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12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22. 6. 7. 체결된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. 6. 7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는 원고를 해할 의사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추정된다.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백소영

별지